

행정대집행 계고서

성명(단체명) : 미 상

주 소 : 시천동 112-2 일원

귀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**시천동 112-2번지** 행정재산을 무단점유(적치물 등) 하였으며, 이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6조(공유재산의 보호)에 규정에 따라 금지된 ‘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점유한 행위’에 해당합니다.

이에 따라, **2026년 8월 31일(월)까지** 반드시 철거 및 원상복구 등 자진정비를 이행할 수 있도록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83조 및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합니다.

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비용은 「행정대집행법」 제5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안내합니다.

※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위 치	대상 또는 종류	수량	대집행 방법
인천광역시 검단구 시천동 112-2	무단점유물 일체 (건축 판넬 등 일체)	1식	자체 집행 (철거)

2026년 8월 10일

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

